

# 定 款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Kolon Industries, Inc.

## 제1장 총 칙

###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LON INDUSTRIES, INC.라 표시한다.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섬유와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2. 타이어코드 및 기타 산업용사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3. 합성수지와 기타 화학제품 및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4. 각종 건축자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5. 전자기기 및 동부분품 동원재료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판매업
6.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7. 부산물로 생성되는 독극물의 정제 가공 및 판매업
8.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사업
9. 부동산 임대업, 매매, 개발업 및 이와 관련된 건설업
10.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건강관련 식품 또는 제품의 제조 가공 및 소분 판매업
11. 의료기기, 의료용구, 위생용품 및 진단시약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12.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13. 관광사업, 관광서비스업, 호텔운영업
14.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5. 자기기록필름 및 디스크 등 자기기록매체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6.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운영사업
17. 정밀화학 및 생명공학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8. 카페트 및 인테리어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9. 플랜트수출입업
20. 통신업
21. 영상 및 멀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 영화, 음반 등의 제작 판매업 및 이와 관련된 영상물(비디오, CD 등) 제조 판매업
22. 각종 캐릭터 관련 상품 제조 판매업 및 캐릭터권 대여 판매업
23. 정수기 부품 및 완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24. 의류, 피혁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5.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26. 도장공사업
27. 미장방수공사업
28. 토공사업
29. 신·재생에너지 사업
30.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사업
33. 공산품의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34. 음·식료품의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35.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집하가공 및 판매업

36. 운송 및 창고 보관업
37. 군납업
38. 광고대행업
39. 신용카드업
40. 공업소유권, 기술도입의 알선 및 판매업
41. 교육, 연수, 연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과 교육용역업
42. 인쇄물, 출판물, 영상/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및 판매업
43. 패션에 관한 연구조사, 정보제공, 컨설팅 및 동서비스업
44. 스포츠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45. 스포츠 레저 정보제공 및 서비스업
46. 종합소매업
47. 인터넷 사업 및 벤처투자
48. 연료전지, 관련 소재 및 부품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
49. 친환경 제품과 그 관련 제품의 연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50. 나노섬유와 그 관련 제품의 연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51. 잡화 및 생활필수품의 제조, 판매, 중개업 및 수출입업
5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53. 시계 및 액세서리 제조 및 동 판매업
54. 유통전문 판매업
55. 자동차 신품 판매업
56. 전 각호에 관련된 투자 및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필요한 국내외 지역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공고의 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lonindustrie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제 2 장 주식과 사채

####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 제7조(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16,725,190주, 우선주식 2,767,860주로 한다.

#### 제8조(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8조의2(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 제9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총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이사회는 우선주식 발행시에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제10조(전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제9조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 삭 제 >

#### 제11조(상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상환주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의 말일에는 잔존하는 당해 상환주식을 모두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은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 상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본 회사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⑥ 제10조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12조(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않는 주식과 신주배정의 경우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 결의로 의한다.
- ② 이사회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약증서(D 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 사업협력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그 상대방의 지분을 소유한 자에게 이를 현물출자 받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②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②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13조(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결의시 정한다.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5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3,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관련 법령 기타 관련 세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3,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관련 법령 기타 관련 세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 삭제 >

제16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의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8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주금의 납입)

주금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인수인은 그 권리를 상실하며 납입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본다.
-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주 주 총 회

### 제21조(총회의 소집)

정기주주총회는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그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 제22조(소집권자 및 공고)

- ① 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의결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가 각 수인일 때에 그 대행의 순서는 미리 대표이사가 이를 정한다.
-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백분의 일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제4조에 규정하는 2개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4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주주총회의 소집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23조(의장)

- ①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5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본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십분의 일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27조(의결권의 위임)

주주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총회의사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이거나 법정대리인에 한하며, 총회 개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의장은 주주로서의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9조(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본 회사에 비치한다.

## 제 4 장 이사 · 이사회

#### 제30조(이사의 선임)

- ① 본 회사는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그 중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이사의 선임은 주주가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④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1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2조(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의 선정)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를 선정한다.
-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③ 이사회는 일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 일인과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정할 수 있다.

#### 제33조(이사회회의 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하시라도 회의할 수 있다.

#### 제34조(이사회회의 소집 및 의장)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삭 제 >
- ③ < 삭 제 >
- ④ 이사회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회사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제35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회회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36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이사회 내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38조(이사회 결의)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비치한다.

#### 제39조(회사의 대표)

-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고 본 회사 전반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보좌하며 제22조 제2항 및 동 제3항의 규정은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에 이를 준용한다.

#### 제40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41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정원수에 미달치 않는 한 보결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규정에 의한다.

제43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5 장 감사위원회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⑧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①항 내지 제⑥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46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6장 계 산

#### 제47조(회계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매년도마다 결산한다.

#### 제4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9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사업년도 중에 생긴 총수익금액에서 영업상 일체의 경비 및 손실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0조(배당)

- ① 주주배당금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50조의2(분기배당)

-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 삭 제 >

제51조(주식의 소각) 삭 제

제52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회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3월 23일)

본 정관은 제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제38조, 제45조, 제48조 및 제51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3월 22일)

본 정관은 제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3월 27일)

본 정관은 제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4월 16일)

본 정관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3월 26일)

본 정관은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 16조의2, 제16조의3, 제18조, 제19조 개정 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3월 25일)

본 정관은 제1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3월 29일)

본 정관은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년 3월 29일)

본 정관은 제1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년 3월 28일)

본 정관은 제1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